

연구윤리 제도 안내

I.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

1 위원회 구성

- 대학원장 포함, 7명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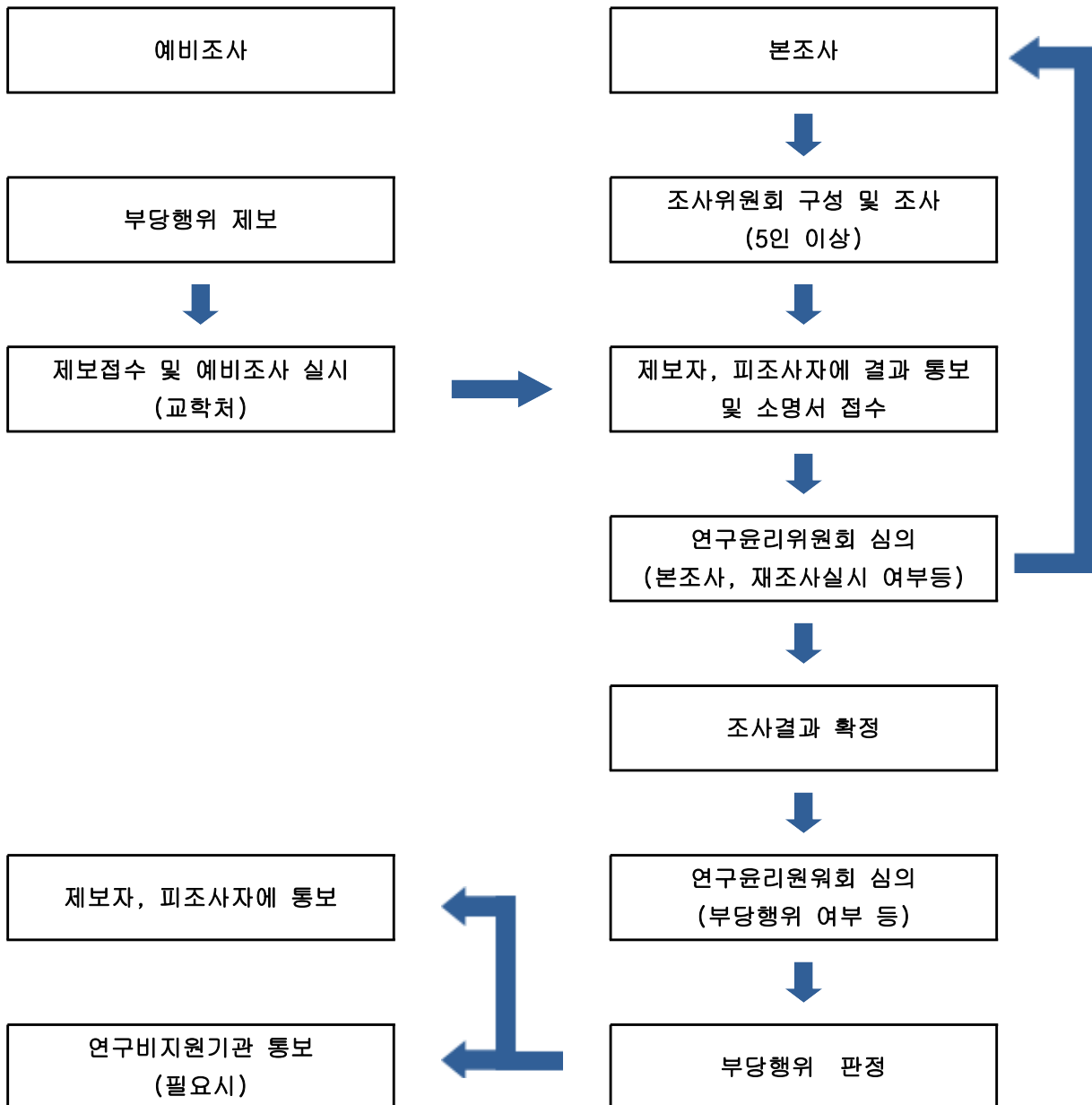
2 위원장

- 대학원장(당연직)

3 역할

- 연구윤리·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
- 부정행위 조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
-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에 관한 사항
-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
-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-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II. 연구윤리 검증 절차 모식도



Ⅲ. 연구윤리 검증 절차 - 조사대상

1 조사대상

- 광신대학교에서 수행된 연구

2 조사범위

- 제한없음

3 제보

- 구술서면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
- 익명으로 제보를 받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당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확보

IV. 연구윤리 검증 절차 - 예비조사

1 담당

- 교학처 /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.

2 기간 및 방법

-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,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

3 검토사항

- 제보내용이 그 자체로 연구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- 제보내용이 진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

V. 연구윤리 검증 절차 - 예비조사 後

1 결과보고서

-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피조사자의 진술내용, 조사의 대상이 된 부당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, 본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권고 및 판단의 근거, 기타 관련 증거 자료

2 결과통보

-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
-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음.

3 의견진술 기회

- 조사완료 후 제보자 및 피조사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 의견진술 등의 기회 제공
-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VI. 연구윤리 검증 절차 - 본조사

1 착수 및 기간

-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착수
-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 (연구윤리위원회 승인하 기간연장 가능)

2 조사위원회의 구성

-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없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
-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(2분의 1이상) 해당 분야의 전문가 1인을 포함한 외부인사(10분의 3이상)
-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림.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함.

3 출석 및 자료보존

- 제보자·피조사자·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.
-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당행위 관련자의 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.

VII. 연구윤리 검증 절차 - 권리보호

1 제보자

- 제보자의 신원을 직·간접적으로 노출시키지 않음.
- 부당행위 저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, 근무조건상의 차별,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이를 조사하여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를 취함.

2 피조사자

- 피조사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함.
- 부당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조사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회와 조사위원회 외부에 노출 금지

3 권리보장

-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공지해야 함.

VIII. 연구윤리 검증 절차 - 결과확정

1 조사결과의 통보

- 합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조사내용 및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함.

2 조사결과의 불복

- 제보자 혹은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한 소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의 요청 가능.
- 재심의 여부의 판단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소명서 수리 후 15일 안에 결정.
- 재심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15일 안에 같은 조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소집함.

3 조사결과의 확정

- 제보자와 피조사자가 소명기한 내 조사결과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,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재심의 실시 여부를 부결한 경우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최종보고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.

IX. 연구윤리 검증 절차 - 판정 및 통보

1 최종보고서

-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, 조사위원 명단, 관련 증거 및 증인
- 조사의 재상이 된 부당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
-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
-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

2 부당행위 판정기준

-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
-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진실성 관련 규정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
- 행위자의 고의, 부당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,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, 부당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
3 통보

- 연구윤리위원회는 판단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함.(기한은 없지만 조치결과를 포함)
- 해당 행위가 부당행위로 판단할 경우, 필요시 관련 내용을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통보함.